

설명자료

2023년 8월

의견조회 기한: 2023년 12월 1일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ISSA)안 5000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별도의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과 함께 읽어야 한다.

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이 문서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작성하고 승인했다. 이 문서는 IAASB 권위 있는 선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국제감사기준 또는 IAASB의 기타국제기준을 수정, 확장 또는 무효화하지 않는다.

IAASB의 목적은 고품질 감사, 인증 및 기타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국제 및 국내 감사 및 인증기준의 융합을 촉진하여 전 세계 업무의 품질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감사 및 인증 전문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IAASB는 모든 전문 회계사가 사용할 감사 및 인증 기준과 지침을 개발하며, IAASB의 활동을 감독하는 공익감독위원회(PIOB)와 기준 및 지침 개발에 공익적 의견을 제공하는 IAASB 자문자문그룹이 참여하는 공동 기준 설정 프로세스에 따라 개발한다. IAASB의 운영을 지원하는 구조와 프로세스는 국제윤리감사재단(IFEA)에서 지원한다.

저작권, 상표권 및 사용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0 페이지를 참조한다.

ISA.



의견 요청

본 설명자료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하고 승인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공개 초안(이하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부속 문서이며,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과 함께 읽어야 한다. 본 설명자료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웹페이지](#) 참조). 이 웹사이트에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승인된 내용이 영어로 게재되어 있다.

공개 초안의 제안사항은 최종 형식으로 발표되기 전에 수렴된 의견을 근거로 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3년 12월 1일까지이다.** 본 기준안의 확정을 위한 일정이 앞당겨졌으므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은 수용 불가함에 유의한다.

답변서 서식 사용

모든 응답자는 제공된 [답변서 서식](#)을 사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권장된다. 답변서 서식은 본 설명자료의 **섹션 2**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서식을 사용하면 본 위원회가 자동으로 답변을 대조하는 과정이 용이해진다. 본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절차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된 의견의 전자적 요약과 분석이 지연될 수 있다.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접수된 의견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면 본 위원회의 답변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서식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고 **답변의 근거를 제시함.**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와 요구사항 또는 적용자료에 어떤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제안을 기재함.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한다고 답하는 경우, 본 위원회가 그러한 견해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됨.
-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특정한 의견이 있는 질문에만 답할 수 있음.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할 때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단락, 제목 또는 특정 문단을 언급하는 등 답변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특정 측면을 식별하는 것이 좋음.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때 서식에 표나 텍스트 박스를 삽입하지 않음.

작성 완료된 [답변서 서식](#)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웹페이지](#)의 “의견 제출” 링크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다. 작성 완료된 답변서 서식을 제출할 때 주요 쟁점을 요약한 커버레터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답변서 서식은 응답자가 속한 조직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응답자의 선택에 따라 전방적 견해를 공개기록에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모든 답변은 공개기록 사항으로 간주되며 궁극적으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승인된 프로젝트 제안서에 기술된 프로젝트 배경과 서론, 그리고 기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기준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제정 접근법을 고려할 때,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승인에 앞서 현장테스트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일부 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대한 답변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현장테스트를 수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현장테스트는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모든 요구사항 또는 특정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다양한 수준에서 실행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설명자료

목차

서론	5
섹션 1 유의적 사항.....	9
섹션 1-A – 지속가능성 인증에 대한 글로벌 기준선을 제공하는 포괄적 기준.....	9
섹션 1-B –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이 다루는 공익적 이슈	11
섹션 1-C –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범위 및 적용 가능성.....	11
섹션 1-D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기준	12
섹션 1-E – 주요 정의 및 용어	13
섹션 1-F – 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우선순위 영역.....	17
섹션 1-G –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언급된 기타 유의적 영역...	25
섹션 1-H – 타 기준의 개정	37
섹션 1-I – 기타 사항	37
섹션 2 응답자를 위한 질문	40
보론 -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제정의 주요 제안사항과 공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제안서의 목표 및 기준제정 조치의 매핑	46

서론

1. 본 설명자료는 2023년 6월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개를 승인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이하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대한 배경과 설명을 제공한다.

배경

2.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보고는 단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의 신뢰성은 특히 투자자와 기타 실체의 일반목적 외부보고서 이용자, 규제기관, 비정부기구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유럽연합 및 기타 관할국가에서 의무 인증 요구사항이 공포되거나 제안되었다.
3. 2022년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와 이에 대한 인증을 촉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했다. 주요 이해관계자에는 국제증권감독위원회기구(IOSCO),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IFIA), 금융안정위원회(FSB), 유럽위원회(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감사감독기구위원회(CEAO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GRI), 법인포럼(FOF), 대표적 글로벌 네트워크 법인으로 구성된 글로벌공공정책위원회(GPPC), 각 관할권/국가의 기준제정기구(NSS)가 포함된다.
4. 이러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인증과 관련된 국제 기준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러한 국제 기준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증 기준의 파편화 위험을 줄이고, 의도된 이용자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일관성 있는 양질의 인증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¹ 인증업무기준 3410², *지속가능성 및 기타 확장된 외부 보고 인증업무에 대한 비권위적 지침*(이하 "EER 지침")이 널리 수용되고 현재 이러한 업무 수행에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과 인증업무기준 3410은 여전히 견고하고 적절한 기준이지만,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에 초점을 맞추며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제정 프로젝트

¹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외 인증업무*

² 인증업무기준 3410, *온실가스보고서에 대한 인증업무*

5. 2022년 9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 인증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제안서](#)를 승인했다:
 - 양질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의적절한 기준에 대한 공익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준
 -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 해당 주제에 관해 공시된 정보, 보고체계에 적합한 기준, 그리고
 - 모든 인증인이 실행 가능한 기준
6.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식별된 이슈, 그리고 프로젝트 제안서의 근거를 형성한 정보 수집, 맞춤형 현장활동, 기타 활동에 대한 설명 등 프로젝트의 범위에 대한 추가적 배경이 기술되어 있다.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에 대한 포괄적 기준 제정 접근법

7.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제정 업무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실행한 조치가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 및 인증업무기준 3410의 관련 정의, 요구사항, 적용자료 중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포함될 사항을 식별함.
 -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업무에 대한 포괄적 기준에 적합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국제감사기준은 무엇이며, 해당 국제감사기준의 요구사항 및 적용자료 중 무엇을 적용할지 식별함.
 - EER 지침을 검토하여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³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를 식별함.
 - 우선순위 영역(아래 **섹션 1-F** 참조)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포괄적 기준에 적합한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개발함.
8. 또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복잡성·이해가능성·확장성·비례성 초안작성 원칙 및 지침](#)을 준수했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협업 및 외부 업무

9. 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공인회계사윤리기준(독립성기준 포함)*의 지속가능성 관련 개정안 제정을 위해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인(즉,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및 기타 전문직)이 실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윤리 및 독립성 기준의 제정이 포함된다. 또한 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이 프로젝트와 함께 정보의

³ EER 지침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포함하여 확장된 외부 보고 인증업무를 지원하는 비권위적 지침으로 유지될 것이다.

작성 및 표시와 감사,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등에서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윤리 및 독립성 기준 제정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와 함께 양 위원회의 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며, 양 위원회의 최종 기준이 발표될 때까지 조정을 지속할 것이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최종 변경사항에 맞추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준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변경사항에 맞추어 추가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특정 자료는 회색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다.

10.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와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각 지속가능성 태스크포스 간 협력을 위해 양 위원회의 협업 멤버를 임명했음.
-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스태프는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에 개최된 국제윤리기준위원회 회의에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의 제정 진행상황을 국제윤리기준위원회에 알리고, 2023년 3월과 4월에 개최된 네 차례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라운드테이블에서 가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음.
- 2023년 1월부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스태프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스태프와 정기 협업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제정과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공인회계사윤리기준 개정안에 모두 영향을 주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주로 다루었음:
 - 지속가능성 정보, 지속가능성인증대상, 업무팀, 인증인, 업무수행리더, 공정한 표시 및 준수 준거기준과 같은 특정한 용어의 정의 통일
 - 타 인증인 및 인증인측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타인의 업무 사용
 -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및 가치사슬에서 정보가 보고되는 시점에 대한 증거 확보
 - 공인회계사와 기타 전문직을 모두 포함하는 인증인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및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적용 가능성
 - 실체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인증 요구사항 및 윤리적 요구사항

자문그룹

11.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기타 전문직으로 구성된 자문그룹 1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자문그룹 2로 이루어진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지속가능성 자문그룹](#)을 통해 지속가능성 인증인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작성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구했다. 자문그룹은 [설립](#) 이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을 수행했다:

- 포괄적 기준의 효과적인 제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공했음.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한 기술적 사항과 이러한 사항이 포괄적 기준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점을 제시했음.
- 포괄적 기준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 사항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음.

주요 이해관계자 협력

1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광범위한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자문그룹(CAG)
- 유럽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 국제증권감독기구, 특정 국가·지역의 현지 규제기관 또는 감사 및 인증 감독기관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그룹 회원
- 유럽감사감독기구위원회, 일본금융청(JFSA),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국제 및 국내 규제 기관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제정기구 및 국가기준제정기구
-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법인포럼, 글로벌공공정책위원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국제 단체

섹션 1 유의적 사항

섹션 1-A - 지속가능성 인증에 대한 글로벌 기준선을 제공하는 포괄적 기준

13.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수용 또는 유지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전반을 다룬다.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글로벌 기준선을 제공하고, 향후 인증인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정될 일련의 지속가능성인증기준의 기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을 원칙에 기반하면서도 충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도록 제정하여, 규모와 복잡성에 관계없이 모든 실체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14. 프로젝트 제안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목적(문단 5 참조)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을 제정했다:
 -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 및 주제의 측면:*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는 매우 협소할 수도 있고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사항과 관련된 주제와 위험 및 기회, 지배구조, 절차, 전략, 시나리오 분석, 약속, 목표 또는 역사적 성과와 같은 주제의 측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을 다룰 수도 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와 주제의 측면에 관한 보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 *모든 보고 방법:* 현재의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관행은 경영진설명서와 같은 통합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에 포함되는 것부터 별개의 독립적 지속가능성 보고서 또는 특정 주제에 관한 보고서까지 매우 다양하다. 여러 관할국가가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규제 요구사항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보고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표준화될 것이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모든 방법을 통해 보고할 수 있고 진화하는 보고 관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따르면,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대상에 관한 특정 정보가 실체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요구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제감사기준이 적용된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11 참조)
 - *모든 적합한 준거기준:* 체계 및 기타 준거기준의 개발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다수의 관할국가가 의무보고를 도입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체계중립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체계 준거기준,

⁴ 최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2024-2027 년 전략 및 업무계획안에 대한 자문에서 지속가능성 및 기타 인증업무 기준에 관한 주제 등 향후 기준 제정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 의견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향후 전략 및 업무계획을 확정할 때 고려될 것이다.

실체가 개발한 준거기준, 두 준거기준의 조합 중 무엇이든 적합한 준거기준을 사용하여 작성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에 적용 가능하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동 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적절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와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의 기준 등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고려했다. 또한 위원회는 특히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관련 인증 요구사항 등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주요 관할권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모든 의도된 이용자:** 의도된 이용자와 그들 각각의 정보 요구는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또는 기타 준거기준의 원천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의도된 이용자와 관계없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실체의 일반목적 지속가능성 보고에 초점을 두고(즉, 의도된 이용자의 공통적 정보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준거기준에 따라)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경우에 따라 특정 이용자가 특정 목적으로 설계된 준거기준을 근거로 작성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요청하거나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27 참조). 또한 투자자 또는 자본제공자와 같은 의도된 이용자들은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이 실체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정책입안자, 비정부기구 또는 옹호단체와 같은 다른 의도된 이용자들은 실체가 지속가능성인증대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두 관점 중 하나 또는 두 관점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준거기준을 고려하도록 제정되었으며, 이를 흔히 “이중 중요성”이라고 한다.
- **제한적 및 합리적 확산업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의 확산과 수준은 관할국가마다 다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일부 관할국가는 현 시점에서는 인증 의무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다른 관할국가에서는 인증을 의무화했거나 의무화할 계획이며, 또 다른 관할국가에서는 처음에는 제한적 확산을 요구한 후 점진적으로 합리적 확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제한적 확산업무와 합리적 확산업무 모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적 기준으로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두 가지 유형의 업무를 모두 다루며, 아래 문단 46-47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제한적 확산 또는 합리적 확산에만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적용자료를 차별화한다.
- **모든 인증인의 이용:** 인증인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따라 양질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 기술 및 기법(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17(e) 참조)과 지속가능성 적격성(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17(tt) 참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술을 갖추도록 요구된다. 재무제표 감사는 관할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증 또는 전문직 회원 자격을 보유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반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인에 대한 요구사항은 여전히 진화 중이다. 이러한 인증인에 대한 요구사항은 일부 관할국가에서는 법규로 정해져 있지만, 다른 관할국가에서는 아직 정책입안자들의 고려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재 다양한 직종의 인증인들이 자발적 및 의무적으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 중이며, 이들은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 인증업무기준 341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기준, ISO가 발표한 기준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요구 또는 허용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기준안에 기재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 전제(아래 **섹션 1-D** 참조)가 적용되는 공인회계사 및 비회계사 인증인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섹션 1-B -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이 다루는 공익적 이슈

15.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을 제정할 때 공익체계에 명시된 질적 기준제정 특성⁵을 준거기준으로 고려하여 기준안이 공익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했다.
16. 본 설명자료의 **보론**에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의 주요 제안사항과 프로젝트 제안서에 기재된 공익을 지원하는 목표 및 기준제정 조치를 매핑하는 표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보론**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제정 시 가장 중점을 두었거나 가장 목적적합성이 높았던 질적 기준제정 특성을 강조한다.

섹션 1-C -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범위 및 적용 가능성

17.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다룬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10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준안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모든 요소에 대한 요구사항과 적용자료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준이다. 따라서 인증인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18. *인증업무개념체계*에 따르면 인증업무는 입증업무 또는 직접업무일 수 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둘 중 입증업무만을 다룬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9 참조).

인증업무기준 3410 과의 관계

19.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과 인증업무기준 3410의 관계에

⁵ 모니터링 그룹 보고서 [국제 감사 및 윤리 기준제정 시스템 강화](#) “기준은 어떤 질적 특성을 보여야 하는가?” 단락의 22-23 페이지) 참조

대한 명확하고 단순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인지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많은 경우 다른 지속가능성 정보와 함께 온실가스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인증인은 온실가스보고서에 대해 별도의 결론을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20.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후,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모든 인증업무에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인증인이 온실가스보고서에 대한 별도의 결론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에는 인증업무기준 3410이 적용된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2 참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또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2에 설명된 접근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증업무기준 3410의 범위 단락에 대한 개정을 제안했다.
21.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이러한 단순한 접근법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을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의 글로벌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인증업무기준 3410의 일부 요구사항과 적용자료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포함되었지만(위 문단7 참조), 인증업무기준 3410은 온실가스보고서에 특정된 추가 요구사항과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체의 온실가스보고서에 대한 별도의 결론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에 여전히 적합하다.
2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이 확정되면 인증업무기준 3410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기존의 인증업무기준 3410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한 결정은 향후 전략 및 업무계획과 관련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추가적 숙의에 포함될 것이다.

섹션 1-D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기준

23.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과 동일하게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5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근거가 된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전제를 설명한다:
 - 업무팀원 및 (해당 업무에 선임된) 업무품질검토자에게는 인증업무와 관련된 국제윤리기준위원회 *공인회계사윤리기준(독립성기준 포함)*의 규정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법규 요구사항이 적용됨. 그리고,
 -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인은 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책임에 관해 품질관리기준서 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법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법인의 구성원임.
24. 이러한 기본 전제는 특히 문단 29, 33와 관련 적용자료 등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요구사항에도 반영되어 있다. 문단 A48과 A56은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법규에 따라 부과된 요구사항이 인증업무의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최소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준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책임과 관련하여 최소한 품질관리기준서 1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25. “최소한 이에 준한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개념은 2020년 12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품질관리기준 발표를 근거로 하여 개정된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규제기관과 국가기준제정기구가 각자의 관할국가에서 “최소한 이에 준한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책임을 공유한다고 언급했다. 이 점을 인정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3가 추가되었다.
26.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기본 전제의 중요성과 공익을 위한 양질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구사항 및 “최소한 이에 준한다”는 개념에 대한 일관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따라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특히 이 사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섹션 1-E – 주요 정의 및 용어

지속가능성 정보 및 지속가능성인증대상

27.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가능한 정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동시에 “지속가능성 정보”는 상이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및 체계, 그리고 국가기준제정기구 및 기타 출처에서 발행한 수많은 문서와 발간물에서 상이하게 사용되고 설명되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다.
28. 간단히 말해, 지속가능성 정보는 지속가능성인증대상에 관한 정보이다. 그러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보고될 사항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또는 기타 해당 준거기준에 기반하며,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보고체계 및 기타 출처에서 상이하게 설명되거나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을 정의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정의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것이다.
29.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정보 및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의 정의(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17(uu) 및 17(w) 참조)는 현재의 지속가능성 환경 및 다양한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내재된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기준과 동일하게 체계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0.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약어 “ESG”로 지칭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항이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현재의 환경 및 진화하는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문그룹 1의 의견을 고려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사항이 포함되고 실체의 활동, 제품, 서비스가 환경,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 또는 실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도록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의 정의를 확대했다.
31.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의 정의에는 해당 사항과 관련된 실체의 정책, 수행, 계획, 목표, 지배구조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배구조가 환경, 사회, 경제, 문화와 유사한 포괄적 주제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지배구조는 실체가 보고할 사항과 해당 사항에 대한 관련 공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위원회는 지배구조가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을 다루기 위해 실체가 취하는 조치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공시되는 모든 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 주제의 측면이라고 생각했다(예: 배출을 포함하는 기후 주제와 관련된 지배구조). 각 주제 및 주제의 측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아래 문단 35-36을 참조한다.

3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정의를 개발할 때 *명확성과 간결성*이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지만, 또한 위원회와 다른 인증기준의 *일관성* 역시 중요함을 인식했다. 지속가능성 정보의 핵심 정의는 "지속가능성인증대상에 대한 정보"라는 덜 기술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른 인증 기준의 기본 개념 및 관련 용어, 특히 "기초인증대상" 및 "인증대상정보" 개념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의 목적에 따라 다음을 적시하도록 정의를 확장했다:
- 해당 준거기준에 따라 측정 또는 평가되는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다른 인증 기준에 제시된 "기초인증대상"에 상응함.
 - 지속가능성 정보는 해당 준거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을 측정 또는 평가한 결과이며, 따라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다른 인증 기준에 제시된 "인증대상정보"에 상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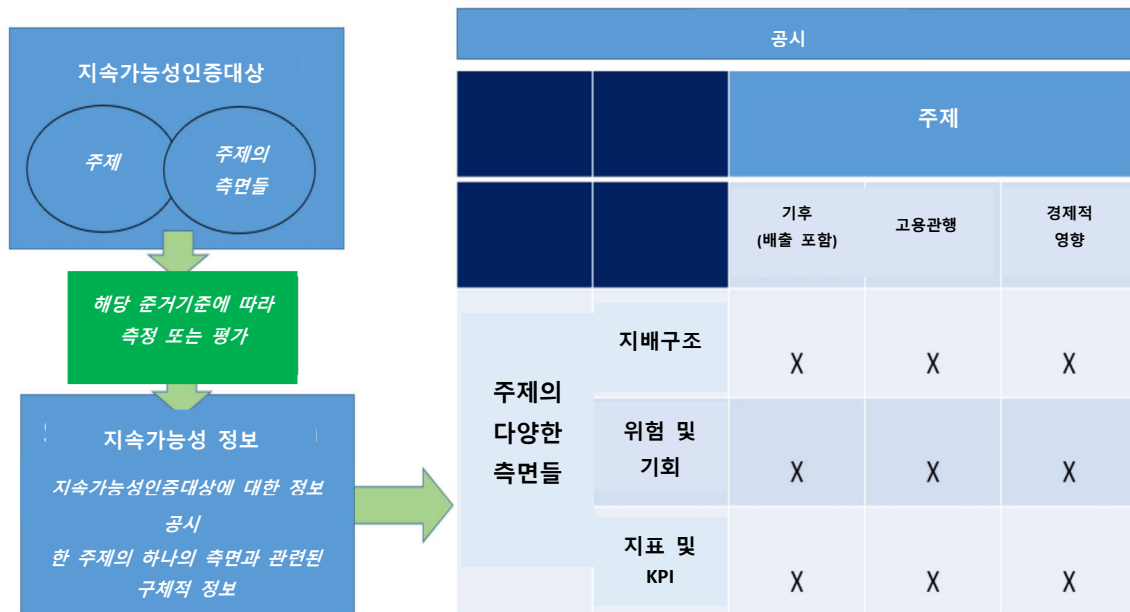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정보의 정의에 대한 국제윤리기준위원회와의 조정

33.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정의를 국제윤리기준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개발 중인 해당 정의와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 프로젝트 태스크포스 및 스태프와의 논의에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지속가능성 정보" 개념은 지속가능성 보고의 맥락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의 맥락에서도 이해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이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보고와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업무에 모두 관련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정의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접근법을 고민하고 있다.
34. 이와 관련하여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공인회계사윤리기준 개정안 발표에 앞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정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양 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해당 정의와 기타 용어를 조율할 추가적 기회가 있을 것임을 인식했다.

주제, 주제의 측면 및 공시

35.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3은 지속가능성인증대상에 대한 실체의 공시는 여러 주제(예: 기후, 노동관행, 생물다양성) 및 주제의 측면(예: 리스크 및 기회, 지배구조, 지표 및 KPI)과 관련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실체의 경영진은 보고할 주제와 주제의 측면을 결정하며(이는 "중요성 절차"로 지칭될 수 있음), 공시는 실체가 주제와 주제의 측면에 대해 보고한 구체적인 정보를 나타낸다.
36.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보론 1은 지속가능성인증대상(즉, 기초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즉, 인증대상정보), 그리고 관련 공시의 관계를 설명한다. 각 주제 및 주제의 측면에 대한 더 포괄적인 예시 목록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32에 기재되어 있다. 이 목록은 프로젝트 제안서의 문단 19에 포함된 예시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그림 1: 지속가능성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 관련 공시의 관계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보론 1)



인증업무 대상 지속가능성 정보

37.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의 범위는 실체가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실체가 보고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와 인증업무 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했다. 위원회는 별도의 용어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인증업무가 지속가능성 정보 전체를 다루지 않는 경우 “지속가능성 정보”라는 용어는 인증업무 대상 정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4에 명시했다. 인증업무 대상인 지속가능성 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기재된 인증업무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성 정보와 그에 대한 인증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17(ee)에 정의된 “기타정보”에 해당한다.

38.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언급은 주로 업무 수용 및 유지 과정에서 확보된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69 참조)

업무수행리더

39.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은 “업무수행이사”를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와 업무 수행, 그리고 발행된 인증보고서에 책임을 지며,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직 단체, 법률 단체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적합한 권한을 부여받은 파트너 또는 법인 내의 기타 개인으로 정의한다.
40.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위원회의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인증인은 업무수행이사라는 용어를 회계 직종에 고유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서 이 용어를 “업무수행리더”로 변경했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17(k) 참조).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18은 업무수행리더라는 용어가 품질관리기준서 1의 “업무수행이사”에 상응한다고 설명한다.⁶

공정표시 준거기준 및 준수 준거기준

41.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경영진이 해당 보고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 2023년 6월*)⁷ 특정한 지속가능성 보고체계가 공정표시 준거기준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준거기준 정의(문단 17(h))는 체계 준거기준이 공정표시 준거기준 또는 준수 준거기준임을 명시하며, 더 나아가 “공정 표시 준거기준” 및 “준수 준거기준”이라는 용어를 정의한다.
42. 지속가능성 정보가 공정표시 준거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전반적 표시, 구조, 내용에 대한 인증인의 평가(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164) 및 인증보고서에 대한 인증인의 결론

⁶ 품질관리기준서 1,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검토 또는 기타 인증 또는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품질관리*, 16(c)문단

⁷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발표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S1

문구(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170(c)(vi))와 관련된 조건부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섹션 1-F - 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우선순위 영역

43. 위 문단 7에 언급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 제안서는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가 요구사항과 적용자료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식별했다:
- (a) 증거의 충분성 등 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의 직무수행 차이
 - (b) 인증업무의 범위
 - (c) "이중 중요성"과 같은 개념의 언급 등 보고 준거기준의 적합성
 - (d) 정보의 신뢰성 및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증거
 - (e) 서술형 정보 및 질적 정보 맥락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인증업무 맥락의 중요성
 - (f) 실체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이 충분한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인증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
44. 이러한 우선순위 영역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한적 확신업무와 합리적 확신업무의 직무수행 차별화

45.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제한적 확신업무와 합리적 확신업무를 단일한 포괄적 기준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제한적 확신은 합리적 확신과 관련된 개념이며, 합리적 확신의 맥락에서 다루어질 경우 차등적 직무수행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음.
 - 인증인이 향후 합리적 확신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제한적 확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예: 법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수행된 업무가 합리적 확신업무와 어떻게 중복되는지 또는 합리적 확신업무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일부 업무의 경우에는 인증인이 하나의 업무 내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고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음.
46.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을 제정할 때, 특히 인증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 자문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했다. 특히 향후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합리적 확신업무로 전환하기 위해(예: 법규에 따라 의무화된 경우) 요구될 추가

절차를 강조하기 위해 직무수행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방향 표시(signposting)”

47.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 및 인증업무기준 3410의 접근법과 동일하게, 제한적 확산업무 또는 합리적 확산업무에만 적용되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요구사항 및 적용자료는 문단 번호 뒤에 문자 “L”(제한적 확산) 또는 “R”(합리적 확산)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열 형식을 이용하여 제한적 확산업무와 합리적 확산업무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구분하며, 이는 업무에서 직무수행이 상이한 측면들과 관련하여 제한적 확산과 합리적 확산 모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열 형식은 위험절차, 중요왜곡표시위험 대응, 인증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제한적 확산업무와 합리적 확산업무의 특정 요구사항을 차별화하는 데 사용된다.
48.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이 최종 기준으로 발표된 이후, 핸드북 전자 버전에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전반에 걸쳐 제한적 확산 및 합리적 확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방향 표시하거나 식별하는 추가 기회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인증업무의 범위

49. 보고되는 지속가능성 정보는 여러 주제 및 주제의 측면들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지속가능성인증대상에만 집중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정보의 보고 범위는 복잡하거나(예: 가치사슬을 포함할 수 있음), 공시마다 상이하거나(해당 준거기준에 따라 상이한 보고 범위가 요구될 수 있음), 그룹 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경영진의 편의가 개입될 수 있다.
50. 인증업무의 범위는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전부부터 일부까지 다양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인증인의 인증업무에 지속가능성 정보 전체가 포함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특정 공시 또는 보고 범위 내의 특정 활동, 지역, 사업장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만 관련될 수 있다. 인증인은 중요하게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와 관련되는 것을 피하고 업무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업무 범위 이외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 확보

51.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의 요구사항과 동일하게,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69는 인증업무를 수락 또는 계속하기 위해 인증업무에 대한 전제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인증인이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정보, 그리고 제안된 인증업무의

범위가 해당 지속가능성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인증인의 사전 지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사전 지식의 확보 방법은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증인은 업무 계획(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88 및 A263 참조) 및 위험 절차 수행 시(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95 및 A292 참조), 업무 수락 또는 지속 과정에서 확보한 이러한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활용한다.

보고 주제 및 주제의 측면을 식별하는 실체의 절차

5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보고될 주제와 주제의 측면, 그리고 보고 범위를 식별하는 실체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해당 보고가 체계 또는 실체가 개발한 준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업무 상황에 대한 인증인의 사전 지식의 일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모든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적용 가능한 포괄적 기준이며, 실체가 보고할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직무수행은 간단할 수 있으므로(예: 법규와 같은 준거기준에 보고 주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실체의 절차를 적용자료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156-A157 참조). 이 적용자료는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69(a)의 요구사항에 기반하고 있다.
53.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업무를 수락 또는 유지하기 전에 인증인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69에 요구된 사전 지식은 해당 업무의 수용 또는 유지에 충분한 지식으로 한정된다. 위 문단 5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인은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시를 식별하거나(제한적 확신업무)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공시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합리적 확신업무) 근거로서 해당 준거기준을 적용하는 실체의 정책 또는 절차와 실체의 내부통제시스템 중 관련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54.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적용자료(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157)에서 실체의 절차는 “보고 주제 식별 절차”, “중요성 평가” 또는 “중요성 절차” 등으로 언급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이러한 용어들은 인증인이 고려하거나 결정하는 중요성과 구별되며, 후자는 업무 상황에서 잠재적 및 식별된 왜곡표시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이용자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성의 한계치만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91 참조)
55.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인증업무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25(c) 참조) 인증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고려되어야 하며, 업무가 합리적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의 일부로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74(c) 참조). 이는 예를 들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부만 업무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업무에는 합리적 목적이 없을 수 있고, 이는 의도된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 준거기준의 적합성 및 이용 가능성

56.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의 접근법은 인증업무에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정보 작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준거기준이 업무 상황에 적합하며 의도된 이용자에게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문단 72의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57. 다른 출처의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및 준거기준은 현재 진화 중이다. 또한 실체가 보고하고자 하는 모든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 적합한 준거기준은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공인된 체계에 따라 적용되는 정당한 절차 외부에서 실체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에 포함된 요구사항에 더하여, 인증인이 인증업무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준거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해당 준거기준의 출처를 식별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72(a) 및 (b) 참조).
58.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법규에 포함되어 있거나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공인된 기구가 발표한 체계 준거기준은 반증이 없는 한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해당 체계 준거기준이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을 측정 또는 평가하기에 충분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체가 개발한 추가 준거기준으로 보완해야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고체계는 더욱 포괄적이고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빈도가 높아질 것이며, 그 결과 더욱 널리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중요성 개념

59. 일부 준거기준은 의도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할 때 “이중 중요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예: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180은 지속가능성 정보의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이 실체에 미치는 영향 또는 실체가 지속가능성인증대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의도된 이용자의 요구가 실체에 미치는 영향과 실체가 지속가능성인증대상에 미치는 영향 모두와 관련된 경우, 이를 이중 중요성으로 지칭할 수 있다. 의도된 이용자의 요구가 항상 두 가지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중 중요성 개념이 모든 업무에 항상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60. 준거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때,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인증인이 준거기준이 문단 72(c)에 식별된 특성인 목적적합성, 완전성, 신뢰성, 중립성, 이해가능성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의도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산출하는 준거기준의 목적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A172(a) 참조), 인증인은 해당 준거기준이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이 실체에 미치는 영향, 실제 실체가 지속가능성인증대상에 미치는 영향, 또는 두 가지 모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이중 중요성).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61. 지속가능성 정보는 다양한 주제와 주제의 측면에 대한 공시로 구성될 수 있으며, 공시의 기초 특성은 다양할 수 있다(예: 질적 또는 양적일 수 있고, 역사적 정보 또는 미래예측정보와 관련될 수 있으며, 사실적이거나 판단을 수반할 수 있음). 그 결과,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증거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한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62.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증거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원칙 기반 접근법을 통해 개발된 감사기준안 500(개정)의 주요 요구사항 및 관련 적용자료를 포함시켰다. 특히 감사기준안 500(개정)은 인증인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이용하는 정보 출처의 진화를 수용한다.
63. 감사기준안 500(개정)의 요구사항 중 다수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과 같은 포괄적 기준에 적합하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범위 내에서 유의성이 있을 수 있는 주제와 공시의 범위를 인식하고 확장성 우려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적용자료에서 감사기준안 500(개정)의 요구사항의 보다 구체적인 측면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64.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서 증거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을 논했다. 위원회는 출처의 다양한 성격과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의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외부 출처로부터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을 언급했다. 감사기준안 500(개정)은 감사인이 정확성 및 완전성 특성이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출처의 증거를 포함하여 감사증거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제감사기준안 500(개정)에 대한 숙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현행 감사기준 500 문단 9의 요구사항과 유사하게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실체가 생산한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초점을 두는 요구사항(문단 84)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결정했다.

중요성

65. 중요성에 대한 고려사항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계획 및 수행할 때와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왜곡표시가 없는지 평가할 때 중요하다.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을 제정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중요성 고려사항이 인증인과 실체에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66.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인증인이 업무의 계획 및 수행 목적으로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할지 또는 “결정”하도록 할지 논의했다. 위원회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중요성 “고려”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중요성 “결정”을 요구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시의 성격, 즉 다양한 주제와 주제의 측면에 대한 질적 및 양적 공시를 고려할 때 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정보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의견 역시 고려했다.
67.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광범위한 논의 끝에 “이원화된” 접근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91은 인증인이 질적 공시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양적 공시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93은 인증인의 중요성 고려 또는 결정과 관련된 요소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소는 적용자료에 설명되어 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A278-A281 참조)
68. 중요성은 전문가적 판단 사항이며, 의도된 지속가능성 정보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한 인증인의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 해당 준거기준에는 실체가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원칙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는 중요성을 지칭하는 용어가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준거기준에 이러한 원칙 또는 용어가 존재하는 경우, 인증인이 해당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거나 판단할 때 참조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인증인의 중요성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275에 설명된 경영진의 “중요성 절차”와는 다르다. 경영진의 “중요성 절차”를 포함하는 실체의 보고 주제 식별 절차는 위 문단 52-55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69.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277은 모든 공시에 동일한 중요성 고려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적시한다. 일반적으로 중요성은 공시마다 다르게 고려 또는 결정된다. 공시가 상이하면 동일한 의도된 이용자라도 정보 요구가 다르거나 왜곡표시에 대한 허용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공시가 상이한 척도를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 질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인증인이 의도된 이용자에게 더 유의적일 수 있는 공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70. 중요성과 잠재적 왜곡표시의 성격 및 가능성에 대한 인증인의 판단은 인증업무에 대한 인증인의 접근법과도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는 업무의 계획과 수행을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가 분류되는 방식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268에 기술되어 있다.
71.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137-144는 인증인이 식별된 왜곡표시를 집계하고 고려하는 것을 다룬다. 여기에는 미수정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문단 163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인증인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

수행 중요성

7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인증업무기준 3410 및 감사기준 320과 유사하게,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수행 중요성 결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언급했다.⁸ 위원회는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이 다루는 질적 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에 대해 항상 중요성보다 낮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73.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합산위험(즉, 양적 공시의 미수정 왜곡표시와 미발견 왜곡표시의 합이 중요할 확률) 개념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문단 92 참조)에 양적 공시에 대해서는 합산위험을 적절히 낮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상황에 따라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수행 중요성 정의(문단 17(gg) 참조)는 인증업무기준 3410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며 이와 일치한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93(b)는 가능하다면 인증인의 수행 중요성 결정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
74.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합산위험의 개념과 이에 따른 수행 중요성의 개념을 질적 공시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수행중요성이 양적 공시에만 관련되며 지속가능성 정보 전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는 질적 공시에 대해 합산위험 개념을 고려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문단 A285)에 EER 지침에 포함된 적용자료를 추가했다.

실체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75.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102L와 102R은 인증인이 위험절차 수행의 일부로 지속가능성인증대상 및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과 관련된 실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해는 인증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왜곡표시의 유형, 그리고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제한적 확신업무)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합리적 확신업무)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76.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A313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실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의 형식 수준은 실체의 규모와 복잡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인증대상 및 해당 준거기준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7.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요구되는 성격과 범위,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제한적 확신업무와 합리적 확신업무에 따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관해 상세히 논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은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을 수

⁸ 감사기준 320, 감사 계획 및 수행의 중요성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인증인은 합리적 확신업무에 대한 통제의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할 수 있음을 적시했다.

78.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이해 및 통제의 운영 효과성 테스트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명확성, 적절한 범위, 확장성*의 중요성을 고려했다. 또한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과 인증업무기준 3410의 기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감사기준 315(2019년 개정)의 개념과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모색했다. 이는 실제와 실제의 환경, 그리고 실제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이해에 관한 위원회의 최신의 생각을 나타낸다.
79.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인증인의 위험절차와 관련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주요 요구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제한적 확신	합리적 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구성요소(통제 환경, 실체의 위험평가절차 결과,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확보함. (문단 102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확보함. (문단 102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인이 통제의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통제(및 관련 IT 일반 통제)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도록 하는 조건부 요구사항 (문단 107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제의 운영 효과성, 관련 IT 일반 통제, 그리고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공시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는 추가 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증인이 판단하는 기타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여, 인증인이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통제에 대한 이해를 구축함. (문단 107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인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통제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고 설계를 평가하며 실행을 결정함. (문단 108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인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통제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고 설계를 평가하며 실행을 결정함. (문단 108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통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통제 미비점이 식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문단 109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통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통제 미비점이 식별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문단 109R)

80.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102L에 따라 요구되는 이해가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로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문단 102L에 언급된 세 가지 구성요소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이 세 가지 구성요소가 인증업무기준 3410의 해당 요구사항과 일치하고, 해당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제한적 확신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을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81.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119-125는 내부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다룬다. 이 요구사항은 제한적 및 합리적 확신업무에 모두 적용되지만, 제한적 확신업무의 경우에는 문단 107L에 기재된 통제의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할지 여부에 대한 인증인의 결정에 따라 조건부로 적용된다. 문단 123R은 합리적 확신업무에만 적용되며 감사기준 330 문단 15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한다.⁹

섹션 1-G -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언급된 기타 유의적 영역

인증인측 전문가 또는 타 인증인의 업무 사용

82.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업무수행리더가 다음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자원이 적시에 업무팀에 할당되거나 제공되었음(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40). 그리고,
 - 업무팀 구성원 및 인증인측 외부 전문가가 전체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적합한 지속가능성 적격성, 인증 기술 및 기법에 대한 적격성과 역량,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음(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41).
83. 지속가능성인증업무는 업무수행리더 및 기타 업무팀 구성원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는 특수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광범위한 기초인증대상에 대해 수행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인증인측 전문가는 인증인측 내부 전문가(업무팀 구성원) 또는 인증인측 외부 전문가일 수 있다.
84. 또한 인증업무의 대상인 지속가능성 정보에는 실체의 조직 경계 내에 있는 다수의 실체 또는 가치사슬의 상위 또는 하위에 있는 실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팀은 인증인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속한 타 인증인의 업무를 사용하고자 할 수 있다.
85.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86에 설명된 바와 같이, 지리적 범위와 실체의 가치사슬에서 도출되는 정보의 정도 등 업무가 복잡할수록 인증인측 전문가 또는 타 인증인의 업무를 업무 전반에 통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더 커질 수 있다.
86. 인증인이 인증인측 외부 전문가 또는 인증인 법인 이외의 법인의 업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42에 따라 업무수행책임자는 인증인이 해당

⁹ 감사기준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업무에 충분하고 적절하게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30도 함께 참조)

87. 아래 그림은 인증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개인과 이러한 개인의 업무에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그림 2: 업무에 관여하는 개인

	인증인이 업무에 충분하고 적절하게 관여할 수 있음	인증인이 업무에 충분하고 적절하게 관여할 수 없음
법인 구성원	업무 팀원 - 지시, 감독, 검토 적용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45-48)	해당 없음
인증인측 내부 전문가	업무 팀원 - 지시, 감독, 검토 적용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45-48)	해당 없음
인증인측 외부 전문가	인증인측 외부 전문가의 업무 사용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42 및 49-50)	해당 없음
타 인증인(네트워크 법인 및 비네트워크 법인 포함)	업무 팀원 - 지시, 감독, 검토 적용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42 및 45-48)	타 인증인의 업무 사용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42 및 51-54)

인증인측 외부 전문가의 업무 사용

88. 인증인측 외부 전문가는 업무팀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의 업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인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42의 충분하고 적절한 관여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내부 전문가는 정의상 업무팀의 구성원이며 따라서 업무팀의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지휘, 감독, 검토 요구사항이 적용되므로, 이 요구사항은 외부 전문가에만 초점을 맞춘다.
89. 인증인이 외부 전문가의 업무에 충분하고 적절하게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해당 외부 전문가의 업무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타 요구사항 및 조건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49에 특정되어 있다.

타 인증인의 업무 사용

90.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한 의견에는 인증인 법인 이외의 다른 법인의 개인들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목적상 업무팀의 구성원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업무팀에 구성원(내부 전문가 포함)이 포함되며, 해당 개인이 업무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고 인증인이 해당 개인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타 법인의 개인을 인증인 법인의 네트워크 내부 또는 외부에 포함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적용자료(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22)를 추가했다. 타 법인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인증인이 해당 업무를 지시, 감독 및 검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법인과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한 해당 법인의 개인은 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니며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서 "타 인증인"으로 지칭된다.
91. 인증인이 인증인 법인 이외의 법인의 업무가 인증인의 인증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며 해당 업무가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인증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에 충분히 관여할 것을 계획한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90 참조). 인증인이 해당 업무를 지시, 감독,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업무팀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92. 그 외 상황에서는 인증인이 타 인증인의 업무에 충분히 관여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인증인측이 타 인증인의 업무에 접근하는 것이 법규에 의해 제한되거나, 해당 타 법인이 수행한 업무가 인증인 업무의 대상인 실체의 조직 경계 외부에 있는 공급망의 일부인 실체와 관련되어 있고 해당 실체의 경영진이나 인증인이 해당 타 법인의 인증업무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 또는,
 - 업무가 이미 수행 완료되었을 수 있음. 자문그룹 1은 해당 업무의 증거가 인증인 인증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이 이미 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타 인증인의 업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음.

93. 문단 91에 기술된 상황에서 그럼에도 인증인이 타 인증인의 업무가 인증인의 인증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51-54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91 참조)

추정치 및 미래예측정보

94.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이 추정치 및 미래예측정보와 관련된 고유한 고려사항을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러한 고려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지역, 활동, 사건의 측정이나 추정치의 측정 또는 평가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정 불확실성은 하나 이상의 사건 또는 상황의 결과에 대한 예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정치를 작성할 때 경영진의 판단(경영진의 편의 가능성 포함) 및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이용함.
 - 추정치 또는 미래예측정보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함.
95. 미래예측정보에는 실체에 대한 예측, 전망 또는 향후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미래예측정보는 경영진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 최적추정가정 또는 가상의 가정을 근거로 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작성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인증대상과 관련된 미래의 사건, 발생사실 또는 조치는 불확실성이 더 클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역사적 기초 인증대상보다 평가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96.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392에 설명된 바와 같이, 추정 불확실성의 출처나 정도 또는 관여된 판단의 정도에 관계없이 경영진은 추정치 및 미래예측정보와 관련 공시를 작성할 때 적절한 방법, 가정, 데이터의 선택과 사용 등 해당 준거기준을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단락에서 추정치와 미래예측정보를 함께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134L-135R 참조). 이러한 요구사항과 관련 적용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감사기준 540(개정)의 요구사항과 적용자료를 고려했다.¹⁰
97. 또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추정치 및 미래예측정보는 향후 별도의 주제별 지속가능성인증기준에서 추가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적시했다.

제한적 확산업무에 대한 위험 절차

98.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제한적 확산업무의 경우 인증인이 중요왜곡표시가

¹⁰ 감사기준 540(개정), *회계 추정치 및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시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위험절차를 설계 및 수행하여, 해당 공시에 초점을 맞춘 추가 절차 설계를 위한 근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94L). 합리적 확신업무의 경우, 인증인은 오류 또는 부정으로 인해 주장 수준에서 공시에 대하여 발생하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기 위해 충분한 위험절차와 추가 절차를 설계 및 수행하도록 요구된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94R).

99.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인이 공시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도록 요구되는지 등 제한적 확신업무와 합리적 확신업무의 직무수행 차별화를 논했다.
100.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접근법이 제한적 확신업무에 대한 위험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과 일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증업무기준 3410은 온실가스보고서 수준에서, 그리고 중요한 배출 및 공시 유형에 대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및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의 접근법은 인증인이 지속가능성 공시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체계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101.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시를 식별하기 위해, 그리고 중요왜곡표시위험 대응을 위한 추가 절차를 설계 및 수행하는 적절한 직무수행을 추진하기 위해 충분히 견고한 위험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요구사항과 적용자료가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시에 초점을 맞춘 추가 절차 설계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히 견고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룹 또는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

10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따라 실체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관련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 실체에 대해 이루어지도록 요구되거나 연결 그룹 내 모든 실체를 대상으로 실체의 중요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이 그룹에 대한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다루는 방식과 범위를 고려했다.
103.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기준안의 원칙 기반 요구사항은 모든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정보가 표시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적용된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8).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11은 해당 준거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가 단일 실체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고, 그룹의 일부인 실체 또는 보고 실체의 가치사슬에 속한 다른 실체의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104. 문단 102에 기술된 상황에서 인증인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접근법을 결정해야 한다. 정보가 실체 내부(즉, 실체의 조직 경계 내)의 여러 위치에 있거나 실체 외부(예: 가치사슬 내)에 있는 경우, 인증인은 절차를 수행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 인증인(인증인 법인 또는 네트워크 내부에 있거나 인증인 법인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문단 89-92의 “타 인증인의 업무 사용” 단락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해당 요구사항은 타 인증인의 업무에 대한 인증인의 관여에 따라 달라진다.
105.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117-A125는 타 인증인의 업무에 대한 인증인의 평가 지침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 인증인 업무의 발견사항에 대한 타 인증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적용자료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51-54의 관련 요구사항은 감사기준 600(개정)의 요구사항 및 적용자료와 유사하며, 어느 정도는 이에 근거하고 있다.
106.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적용자료에는 그룹 또는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몇 가지 언급과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93에는 그룹의 일부이거나 해당 실체의 가치사슬에 있는 타 실체에 대한 정보(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서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정보)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할당 또는 제공되는 자원이 충분하고 적절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업무가 여러 실체와 관할국가에 걸쳐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수행리더의 결정이 기술되어 있음.
 - 업무수행리더가 유의적 판단과 관련된 업무 문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47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105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복수의 실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의 유의적 판단의 예를 제공함(예: 그룹의 일부이거나 보고 실체의 가치사슬에 있는 타 실체에 대한 정보).
 -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A188은 가치사슬 내에 있지만 실체의 그룹 외부에 있는 실체와 같이 실체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조직에 위치한 증거를 인증인의 증거 확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의 성격과 이용 가능성의 예시로 언급함.
107.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다루기 위해 감사기준 600(개정)의 특정 요구사항이나 적용자료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에 포함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위원회는 감사기준 600(개정)이 특별 고려사항의 기준이며, 그룹 재무제표 감사 시 다른 모든 관련 감사기준과 함께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포괄적 기준인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그룹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및 지침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룹 또는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를 다루는 별도의 지속가능성인증기준이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부정

108. 이해관계자들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서 부정("그린워싱" 포함)이라는 주제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그리고 지속가능성인증대상 및 지속가능성 정보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며 많은 경우 역사적 재무정보에 비해 성숙도가 낮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경영진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타겟이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경우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민감성이 높아질 수 있다.
109.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인증인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고려하고 업무 중 확인된 실제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요구사항 및 적용자료 전반에 걸쳐 부정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왜곡표시의 정의(문단 17(aa)) - 왜곡표시는 오류 또는 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질적 또는 양적일 수 있고, 누락된 정보 또는 공시의 표시를 모호하게 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 요구사항:
 -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함. (문단 59)
 - 증거로 이용하려는 정보의 목적적합성 또는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의구심이 부정으로 인해 공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업무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문단 87)
 -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해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시를 식별하거나(제한적 확신업무)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공시에 대한 주장 수준에서 식별하고 평가하기에(합리적 확신업무) 충분한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함. (문단 94L 및 94R)
 - (특히 업무수행리더 및 업무팀의 기타 핵심 구성원, 그리고 인증인측 주요 외부 전문가와 함께)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의 중요왜곡표시 가능성을 논의함. (문단 96)
 - 성격, 시기, 범위 측면에서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시에 초점을 맞추거나(제한적 확신업무),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한 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합리적 확신업무) 추가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함(문단 114L 및 114R).

- 업무 중 확인된 실제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적절히 대응하고, 인증인의 위험 절차와 서면진술의 신뢰성 등 인증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적절한 조치를 실행함. (문단 117 및 118)
- 식별된 왜곡 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에 기인한 것일 수 있는지 판단하고, 부정에 기인한 중요왜곡표시의 징후가 있는 경우 적절히 대응함. (문단 138)
- 경영진의 편익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가 식별되는 경우 그로 인한 인증업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경영진의 편익은 그 성격이 기망적임. (문단 161)
- 적용자료:
 - 공시의 중요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의 특성에는 복잡성, 판단, 변화, 불확실성 또는 경영진의 편익이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에 대한 민감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해 공시가 중요왜곡표시에 민감해질 수 있음. (문단 A295 및 A296)
 - 부정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정보 왜곡 표시의 예시 (문단 A406)

110. 또한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부정 및 법규 위반 주제에 대한 국제윤리기준위원회와의 지속적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111.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62는 인증인이 업무 조건 및 기타 업무 상황에 따라 경영진, 지배기구 등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유의적 사항을 발견했는지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적용자료는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유의적 사항의 예를 제시한다.

112.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이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상세히 다루어야 하는지 논의했다. 위원회는 문단 62의 요구사항이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과 일치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진화하는 성격과 실체가 공시할 수 있는 주제 및 주제의 측면을 고려할 때 해당 요구사항이 관련 적용자료와 함께 여전히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사항의 유형 예시 등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응답자들의 견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기타정보

113.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의 맥락에서 "기타정보"의 개념을 고려했다.

기타정보란 인증업무의 대상인 지속가능성 정보가 포함된 문서 및 그에 대한 인증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이다. 위원회는 특히 자문그룹으로부터 인증인이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 또는 인증인이 인증업무에 관해 확보한 지식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 그리고 기타정보에 왜곡표시의 징후가 있는지에 유의할 것을 요구하는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자문그룹 구성원들은 인증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인증인이 실체가 보고하는 정보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와 관련될 위험이 높아짐을 언급했다. 이러한 정보 중 인증업무의 대상인 지속가능성 정보는 일부에 불과하다.

114.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감사기준 720(개정)¹¹이 가장 최신의 관련 기준이며 따라서 위원회의 최신 생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시장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합리적 확신이 재무제표 감사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따라서 기타정보에 대한 인증인의 책임에 대한 유사한 기대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에 반영되어야 한다.
115. 그러나 위원회는 감사기준 720(개정)이 상장기업에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인증보고서일 이후까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기타정보를 인증인이 확보하고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많은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범위가 협소할 수 있고 따라서 인증업무 범위 내의 지속가능성 정보와 비교하여 기타정보의 양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보고서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항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증인이 인증보고서일 이후에 입수되는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고려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적용자료가 제공되었다.

보고 요구사항 및 인증보고서

116.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지속적인 현장활동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인증보고서 이용자를 위해 확보된 인증 수준, 인증업무의 범위, 보고서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일관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는 등의 보고와 관련된 이슈를 빈번하게 제기했다.
117.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자문그룹 구성원들은 진화하고 성숙해지는 보고 환경에서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증보고서에서 인증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문형 보고를 허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18. 전체적으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인증보고 요구사항 개발은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과 인증업무기준 3410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했으나, 감사기준에 반영된 최신의 생각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보고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었다. 특히 위원회는

¹¹ 감사기준 720(개정),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 700(개정)¹², 감사기준 710¹³, 감사기준 720(개정), 감사기준 800(개정)¹⁴의 관련 요구사항을 고려했다.

인증 보고서의 순서 및 내용 요소

119. 최근 작성 완료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감사인 보고 이행 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감사기준 700(개정)에 따라 기타 업무에 대한 인증보고서를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 보고서와 연계하여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구했다. 감사기준 700(개정)은 인증인의 의견을 먼저 제시한 후 의견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또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의 경우)과 독립성 및 기타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진술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보를 인증보고서에 포함하면 특히 동일한 실체에 대한 보고서에서 감사 및 인증보고서 전반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피드백이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업무수행이사(업무수행리더에 상응)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요구사항은 많은 경우 관할국가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며, 새로운 요구사항의 도입에 앞서 이미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이 요구되는 관할국가 많기 때문에 이는 유의적이거나 새로운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120. 국제감사기준 700(개정)은 보고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순서를 포함하여 감사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최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이를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보고서의 요소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인증보고서의 기본 요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170 참조). 또한 위원회는 이름 공개로 인해 유의적인 개인 보안 위협이 초래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흔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법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관한 인증보고서에 업무수행책임자의 성명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것을 결정했다(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171 참조). 이는 감사기준 700(개정)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감사사항

121. 위원회는 핵심감사사항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잠재적 공익적 이익을 인정하고, 핵심감사사항 개념을 다른 인증보고서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감사인 보고 이행 후 검토의 결과를 고려했다. 이 검토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인증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 핵심감사사항이 제한적 확신의 인증보고서에 포함되는 경우, 이용자는 보고하고자 하는

¹² 감사기준 700(개정),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형성 및 보고

¹³ 감사기준 710, 비교정보-상응하는 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¹⁴ 감사기준 800(개정), 특별 고려사항-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인증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증을 인식할 수 있음.

- 인증업무에 대한 핵심감사사항 보고의 비용이 효익보다 더 클 수 있음.
- 다른 유형의 인증업무와 재무제표 감사 간 명확한 구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전자에 대한 보고의 유연성이 포함됨.

122. 또한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에 따라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서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상장기업 이외의 실체, 보고되는 지속가능성 정보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 협소한 범위의 업무, 또는 특정 목적으로 설계된 준거기준에 따라 작성된 지속가능성 정보에는 핵심감사사항의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 검토에 대해서는 핵심감사사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한적 확신업무에는 적절하지 않거나 심지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핵심감사사항 보고 요구사항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업무와 관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123. 그 결과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모든 유형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하는 포괄적 기준이므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핵심감사사항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항(예: "주요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의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대신 위원회는 향후의 지속가능성인증기준에서 핵심감사사항을 다루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기타 보고 책임

124. 일부 관할국가에서 인증인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에 더하여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된 기타 보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증인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디지털 텍소노미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같은 특정 사항에 대한 결론을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보고서의 일부로 이러한 기타 책임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 또는 허용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인증인이 그러한 책임을 별도의 보고서로 보고하도록 요구 또는 허용될 수 있다.

125.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인증인 보고서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에 따른 인증인의 책임 이외의 다른 보고 책임을 다룰 수 있다고 결정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173-176 참조)

기타정보의 보고

126. 위 문단 113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인증보고서일 이후에 확보된 기타정보를 제외한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고려할 때 요구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감사기준 720(개정)의 접근법을 따랐다. 그러나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에는 기타정보와 관련된 보고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보고 요구사항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감사기준 720(개정)의 접근법을 따라 인증보고서에 기타정보에 대한 별도의 단락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170(e) 및 181-182 참조)

비교정보

127.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감사인보고서와 인증보고서가 서로 비교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므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비교정보에 대한 접근법이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접근법과 일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해당 준거기준에 따라 비교정보의 필요 여부가 결정됨을 인식하고, 감사기준 710의 재무제표 감사 비교정보에 대한 접근법을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문단 187-191 참조)

예시보고서

128.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에는 예시보고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EER 지침의 예시보고서는 잘 수용되고 사용되었다.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필수 보고 요소의 기본적 내용만 포함된 포괄적 예시(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170-171 참조)를 포함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일관성을 해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인증인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170에 기술된 기본 요소에 더하여 인증보고서에 추가 정보를 포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문단 A490 참조)

129. 의무 인증을 도입 중인 많은 관할국가에서는 우선 제한적 확신을 요구한 후 점진적으로 합리적 확신을 도입할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 모두에 대한 예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실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 중 특정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적 확신을 확보하고 다른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 확신을 확보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인증보고서에서 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을 모두 보여주는 보고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성 보고가 여전히 성숙해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변형 인증보고서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한정결론을 보여주는 보고서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130.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보론 2에는 문단 128에 기술된 상황에 대한 예시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예시보고서를 개발할 때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요구된 기본 보고 요소(문단 170-171에 명시)와 기타정보(보론 2, 예시 1 및 3)와 같은 기타 일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자 했다.

131.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는 제한적 확신업무의 경우 수행된 절차가 합리적 확신업무와 다르거나

그 범위가 좁다는 점, 그리고 확보한 확신 수준이 합리적 확신업무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을 인증보고서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진술을 충분히 눈에 잘 띄고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인증보고서 내에 적절히 배치할 것을 고려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진술이 인증업무기준 3410의 제한적 확신 예시보고서의 말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 진술을 결론 단락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진술을 더욱 눈에 잘 띄도록 제한적 확신의 인증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근거” 단락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섹션 1-H – 타 기준의 개정

13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타 기준 개정의 건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다양한 기준의 관련 문단에 표시된 텍스트로 기재되어 있다. 개정이 제안되었거나 개정안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문단만 제시되어 있다. 많은 경우 변경 사항은 용어와 문구를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과 일치시키거나 개정된 기준의 제목을 적절히 참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섹션 1-I – 기타 사항

확장성 고려사항

133. 원칙에 기반한 기준인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요구사항은 인증인이 인증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또는 단계보다는 주로 원칙 또는 결과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특정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는 한(조건부 요구사항),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과 관련이 있거나 공익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에 해당된다(이에 따라 인증인이 관련 요구사항을 이탈하지 않아도 됨). 이 접근법은 적용되는 원칙의 예외를 제한함으로써 기준의 **확장성과 포괄성**을 지원하고, 성격과 상황의 복잡성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실체에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134. **확장성**과 관련하여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위원회의 다른 기준에서 취한 접근법과 동일하게 감사인 절차의 성격과 범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설명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적용자료를 포함시켰으며(예: 문단 A287), 실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하는 경우(예: 문단 A314-A315L 및 A336) 또는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경우(예: 문단 A372)와 같은 예시를 포함시켰다.

공공부문 실체에 특정된 고려사항

135.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보고가 공공부문 실체와도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위원회와 위원회 자문그룹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공공부문 실체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공부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조건부 요구사항이 필요한지 또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추가 지침 또는 예시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시행일 규칙

136.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시행일에 대한 적절한 규칙을 식별할 때 다음 사항에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 (a) 일정 기간(예: 일정 기간 동안의 목표 대비 성과) 또는 특정 시점(예: 전략, 또는 절차나 통제의 실행)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관한 업무
- (b) 입증업무. 따라서 적합한 기간은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간이어야 한다.
- (c) 업무의 계획 단계를 포함하는 업무 수행. 따라서 복잡성·이해가능성·확장성·비례성 초안작성 원칙 및 지침은 시행일 문단에서 “이후에 개시하는”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의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a) []년 []월 15일 이후에 개시하는 기간, 또는
- (b) []년 []월 15일 이후의 특정 일자

제안된 실행 기간

137.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보고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규제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관할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글로벌 기준선 제공을 위한 포괄적 기준의 제정이 외부 보고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또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준안의 채택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국가별로 정당한 절차와 번역이 필요하며, 법인 방법론, 지원 도구, 훈련 자료에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138. 품질 업무의 일관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준안의 효과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승인 후 약 18개월의 실행 기간을 제안한다. 이 실행 기간은 시급성과 기준 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허용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고 장려할

설명자료 -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것이다(즉, 명시된 시행일 이전에 기준안을 적용할 수 있음).

섹션 2 응답자를 위한 질문

응답자는 본 설명자료 2 페이지 의견 요청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답변서 서식](#)을 사용하여 아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응답자를 위한 질문	본 설명자료의 참조 섹션 또는 문단
일반적 질문	
<i>지속가능성 인증을 위한 글로벌 베이스라인 기준</i>	
1.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이 본 설명자료 문단 14에 기술된 각 항목에 포괄적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단 14의 항목 중 응답자의 상세 의견과 관련된 항목을 명시한다(각 관련 항목의 제목).	섹션 1-A, 문단 14
<i>공익 부응성</i>	
2. 프로젝트 제안서의 질적 기준제정 특성과 기준제정 조치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이 공익에 부응한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섹션 1-B 및 보론
구체적 질문	
<i>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적용가능성 및 인증업무기준 3410과의 관계</i>	
3.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이 아닌 인증업무기준 3410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등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범위와 적용가능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범위 설정을 더 명확히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섹션 1-C
<i>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기준</i>	

<p>4. 인증업무에 대한 윤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준하고,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최소한 품질관리기준서 1에 준한다는 개념이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충분히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적용자료에 제안할 사항은 무엇인가?</p>	<p>섹션 1-D</p>
<p><i>지속가능성 정보 및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의 정의</i></p>	
<p>5.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기술된 지속가능성 정보 및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의 정의를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할 사항은 무엇인가?</p>	<p>섹션 1-E, 문단 27-32</p>
<p>6. 지속가능성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관계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할 사항은 무엇인가?</p>	<p>섹션 1-E, 문단 35-36</p>
<p><i>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의 차별화</i></p>	
<p>7.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확신업무의 관련 요소에 대한 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 직무수행을 적절히 다루고 차별화함으로써 제한적 확신업무와 합리적 확신업무 수행 모두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제안할 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섹션 1-F, 문단 45-48</p>
<p><i>업무 범위를 포함한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i></p>	
<p>8.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와 제안된 인증업무의 범위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보할 인증인의 책임을 충분히 명확하게 제시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요구사항을 더 명확히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p>	<p>섹션 1-F, 문단 51</p>
<p>9.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보고할 주제와 주제의 측면을 식별하는 실체의 “중요성 절차”에 대한 인증인의 고려를 적절히 다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섹션 1-F, 문단 52-55</p>

<i>준거기준의 적합성 및 이용 가능성</i>	
10.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실체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준거기준의 적합성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인증인의 평가를 적절히 다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제안할 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섹션 1-F, 문단 56-58
11.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은 이중 중요성이 인증인의 중요성 고려 또는 결정과 어떻게 다른지 등 “이중 중요성”의 개념을 체계 중립적인 방식으로 적절히 다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제안할 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섹션 1-F, 문단 59-60 및 68
<i>중요성</i>	
12. 인증인이 질적 공시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양적 공시에 대해서는 중요성(수행중요성 포함)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접근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섹션 1-F, 문단 65-74
<i>실체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i>	
13. 제한적 확산업무와 합리적 확산업무에 대하여 실체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확보를 차별화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접근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차별화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할 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섹션 1-F, 문단 75-81
<i>인증인측 전문가 또는 타 인증인의 업무 사용</i>	
14. 인증인이 인증인 법인 이외의 다른 법인의 업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 해당 법인 및 해당 법인의 개인이 업무팀의 구성원인 경우와 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타 인증인”인 경우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할 사항은 무엇인가?	섹션 1-G, 문단 82-87

<p>15. 인증인측 외부 전문가 또는 타 인증인의 업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요구사항이 명확하며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요구사항을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p>	<p>섹션 1-G, 문단 88-93</p>
<p><i>추정치 및 미래예측정보</i></p>	
<p>16. 추정치 및 미래예측정보와 관련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요구사항의 접근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할 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섹션 1-G, 문단 94-97</p>
<p><i>제한적 확산업무에 대한 위험 절차</i></p>	
<p>17. 제한적 확산업무에서 인증인이 합리적 확산업무의 경우처럼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시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위험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접근법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섹션 1-G, 문단 98-101</p>
<p><i>그룹 및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i></p>	
<p>18.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이 포괄적 기준임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원칙 기반 요구사항이 그룹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 또는 실체가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시하는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할 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섹션 1-G, 문단 102-107</p>
<p><i>부정</i></p>	
<p>19.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이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중요왜곡표시에 대한 민감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부정("그린워싱" 포함)이라는 주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정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섹션 1-G, 문단 108-110</p>

<i>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i>	
20. 경영진, 지배기구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대략적 요구사항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적절한 사항에 대한 관련 적용자료의 내용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다면, 제안할 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섹션 1-G, 문단 111-112
<i>보고 요구사항 및 인증보고서</i>	
21.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요구사항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는 인증보고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인증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또는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사항을 기재한다.	섹션 1-G, 문단 116-120 및 124-130
22.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서 "핵심감사사항"의 개념을 다루지 않고, 대신 향후 개발될 일련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지속가능성인증기준에서 이를 다루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의 접근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할 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섹션 1-G, 문단 121-123
23. 제한적 확산업무에서 수행된 업무의 범위와 성격은 합리적 확산업무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이라는 인증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근거 단락"의 설명이 충분히 눈에 잘 띄는가? 그렇지 않다면, 제안할 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섹션 1-G, 문단 131
<i>기타 사항</i>	
24.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에서 다루어야 할 공공 부문 관련 고려사항이 있는가?	섹션 1-I, 문단 135
25.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과 관련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다른 사항이 있는가?	

일반적 의견 요청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한다:

26. 번역 —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많은 응답자들이 최종 지속가능성인증기준을 각자의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번역을 수행하고자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공개초안 검토 과정에서 응답자가 인지한 잠재적 번역 이슈에 대한 의견을 환영한다.
27. 시행일 — 섹션 1-1 - 기타 사항 문단 13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특정 날짜에 개시되는 기간 또는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업무에 대한 본 기준의 적절한 시행일은 최종 기준의 승인으로부터 약 18개월 후로 판단하며, 조기 적용을 허용 및 권장한다. 이 기간이 감사기준의 효과적인 실행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할 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론 -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 제정의 주요 제안사항과 공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제안서의 목표 및 기준제정 조치의 매핑

1. 본 보론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의 주요 측면과 공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제안서의 목표 및 기준제정 조치의 매핑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제안서](#) 문단 13, 18, 27 참조)
2. 또한 본 보론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을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목적적합성이 높은 다음과 같은 질적 기준제정 특성을 강조한다(프로젝트 제안서 문단 32 참조):
 - (a) **적시성** - 품질 저하 없이 식별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적시에 기준을 제정하는 것에 초점을 둠.
 - (b) **목적적합성** - 지속가능성 보고 및 그에 대한 인증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 진화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인식,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두며,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해서는 상이한 상황에서(즉,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이 실체에 미치는 영향과 실체가 환경,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 보고의 맥락에서) 해당 요구사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칙에 기반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둠.
 - (c) **포괄성** - 기준안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다룸.
 - (d) **실행가능성** - 기준안이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실체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각 관할국가에 널리 확산된 상이한 조건에 맞게 조정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둠.
 - (e) **집행가능성** - 인증인 또는 업무수행리더의 명확히 기술된 책임, 그리고 기준안의 요구사항과 적용자료의 적절한 균형에 초점을 둠.
 - (f) **확장성** - 규모와 복잡성에 관계없이 모든 실체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포함(즉, 실체의 성격과 상황에 상응하는 복잡도가 낮은 상황과 높은 상황을 모두 다룸)함으로써 기준안이 상이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비례성을 반영함.

<p><u>프로젝트 제안서의 목적</u> 및 기준제정 업무</p>	<p>지속가능성 인증기준안 5000의 관련 문단</p>	<p>설명</p>	<p>고려된 질적 기준제정 특성¹</p>
<p>프로젝트 목적 (a): 양질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가 일관성 있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시의적절한 기준에 대한 공익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포괄적 지속가능성 보고 인증 기준을 개발한다. (프로젝트 제안서, 문단 13 참조)</p>			
<p>모든 인증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인증 기준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기준제정 조치를 취한다.</p>	<p>[전반적 접근법]</p>	<p>프로젝트 제안서의 섹션 G에 제시된 예비 일정표는 시의적절한 기준제정 조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2023년 3월 회의에서 적절히 견고한 기준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의 제정을 가속화할 것에 합의했다. 공개 초안의 승인은 2023년 9월에서 2023년 6월로 앞당겨졌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시성
<p>프로젝트 목적 (b) 및 (c):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성 보고 인증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 기준을 개발한다(프로젝트 제안서, 문단 13 참조):</p> <p>(b)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 해당 주제에 관해 공개된 정보, 보고체계 전반에 적합함. 그리고,</p> <p>(c) 모든 인증인이 실행 가능함.</p>			

¹ 표에 나열된 질적 기준제정 특성은 관련 제안서를 개발할 때 가장 우선시되거나 가장 목적적합성이 높은 특성이다.

<p>업무 수용부터 보고까지 인증업무의 모든 요소를 다룸으로써 인증업무 수행 전체를 다루는 기준을 제정한다. (프로젝트 제안서, 문단 18(a) 참조)</p>	<p>문단 18-192, 모든 요구사항 및 관련 적용자료</p>	<p>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은 수용 또는 유지부터 보고까지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적합성 준거기준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에 적용 가능하다. 요구사항과 적용자료는 인증업무의 모든 요소를 다루는 적절한 제목과 부제 하에 정리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성 • 집행가능성
<p>구체성의 정도는 기준의 포괄적 성격에 상응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프로젝트 제안서에 식별된 우선순위 영역에 대하여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 및 인증업무기준 3410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기준을 제정한다. (프로젝트 제안서, 문단 18(b) 참조)</p>	<p>[전반적인 접근법]</p>	<p>우선순위 영역은 프로젝트 제안서 문단 27에 기재되어 있다. 아래 각 칸의 내용은 기준안에서 각 우선순위 영역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기술하며, 우선순위영역 1-6으로 표시되어 있다.</p> <p>또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의 요구사항과 적용자료는 보다 일관성 있는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해 복잡성·이해가능성·확장성·비례성 초안작성 원칙 및 지침에 따라 초안이 작성되었다.</p>	<p>[아래 칸의 각 우선순위 영역에 명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가능성

<p>우선순위영역 1: 증거의 충분성 등 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의 직무수행 차이</p>	<p><u>요구사항</u></p> <p>문단 94L - 136</p> <p>문단 168 - 192</p> <p><u>적용자료</u></p> <p>문단 A286 - A397</p> <p>문단 A463 - A521</p> <p><u>보론 2</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왜곡표시위험, 해당 위험에 대한 인증인의 대응, 인증보고서 작성을 중점으로 하여, 업무 전반에 걸쳐 증거의 충분성 등 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 간 직무수행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함. 대부분의 요구사항과 적용자료가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 모두에 적용되지만, 열 형식을 사용하여 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 간 요구사항과 적용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구분함. 문단 번호 뒤에 문자 (R)과 (L)을 사용하여 각각의 업무에 적용되는 자료를 표시함. 보고 요구사항이 각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인증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인증업무 유형(합리적, 제한적 또는 두 유형의 조합)에 대한 인증 예시보고서를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적합성 포괄성 실행가능성 집행가능성
<p>우선순위영역 2: “이중 중요성”과 같은 개념의 언급 등 보고 준거기준의 적합성</p>	<p><u>요구사항</u></p> <p>문단 72, 98, 145</p> <p><u>적용자료</u></p> <p>문단 A166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업무의 전제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일부로, 인증인이 보고 준거기준의 적합성과 의도된 이용자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모두 평가할 것을 요구함. 인증인이 인증업무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준거기준의 존재 여부를 평가할 것을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적합성 실행가능성

	<p>A186 문단 A299 - A301 문단 A424 - A4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인이 준거기준의 출처를 식별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준거기준이 체계 준거기준, 실체가 개발한 준거기준, 또는 두 가지의 조합일 수 있음을 인식함. • 인증인이 준거기준이 목적적합성, 완전성, 신뢰성, 중립성, 이해가능성의 5가지 특성을 나타내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함. • 적합성 준거기준의 각 특성에 대한 상세한 적용자료를 제공함. • 적용자료는 인증인이 질적 지속가능성 정보 및 미래지향적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준거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지침을 제공함. • 적용자료는 법규에 포함되어 있거나 투명하고 적당한 절차를 따르는 승인된 또는 공인된 전문가 기구가 발표한 체계 준거기준은 반증이 없는 한 적합한 것으로 인정함. • 적용자료는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기초인증대상이 실체에 미치는 영향(재무적 중요성으로 지칭 가능)과 실체가 기초인증대상에 미치는 영향(영향 중요성으로 지칭 가능) 모두와 관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해당 준거기준은 이 두 가지 영향을 “이중 중요성”으로 지칭할 수 있음. 	
--	---	--	--

<p>우선순위영역 3: 인증업무의 범위</p>	<p><u>요구사항</u></p> <p>문단 3-4, 7-9</p> <p>문단 17</p> <p>문단 69-77</p> <p>문단 88</p> <p>문단 170</p> <p><u>적용자료</u></p> <p>문단 A10-A12</p> <p>문단 A15-A16</p> <p>문단 A32</p> <p>문단 A154-A202</p> <p>문단 A261</p> <p><u>보론 1</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인증대상 및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함. 지속가능성인증기준안 5000의 보론 1은 지속가능성인증대상(즉, 기초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즉, 인증대상정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관련 공시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기술함. 적용자료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지속가능성인증대상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여러 주제 및 해당 주제의 측면을 다룰 수 있음을 명확히 기술함. 주제 및 주제의 측면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예시 목록을 제공함. 인증인이 인증업무의 전제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용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함. 보고 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적용자료와 실체가 지속가능성 주제 및 주제의 측면을 식별하는 절차가 기술되어 있음. 인증인이 제안된 인증업무의 범위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보고 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포함되는 보고 범위를 평가도록 요구함. 인증인이 업무에 합리적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적합성 실행가능성 확장성
----------------------------------	--	---	---

		<p>요구함. 관련 적용자료는 제한적 확산업무에서 유의미한 확산 수준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인이 인증보고서에 업무 범위를 기술하도록 요구함. 여기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확산, 제한적 확산 또는 상이한 수준의 확산 등 인증인이 확보한 확산 수준을 식별하거나 기술하는 것이 포함됨. • 상대적으로 복잡성이 낮은 실체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경우의 확장성을 다루는 적용자료가 제공됨. 	
<p>우선순위영역 4: 정보의 신뢰성과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증거</p>	<p><u>요구사항</u> 문단 82-87 문단 94L-113 문단 114L-136 <u>적용자료</u> 문단 A209- A2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 외부의 출처에서 확보한 정보를 포함하여, 증거로 사용하려는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칙에 기반한 접근법을 사용함. 적용자료에는 목적적합성 및 신뢰성이라는 속성과 이러한 속성에 대한 인증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음. • 인증인이 편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설계 및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요구사항이 포함됨. • 실체가 생성한 정보가 인증인의 목적상 충분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목적적합성</i> • <i>포괄성</i> • <i>실행가능성</i> • <i>집행가능성</i> • <i>확장성</i>

	<p>문단 A286-A357L</p> <p>문단 A358-A397</p>	<p>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영진측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포함됨. • 적용자료에 인증인이 증거로 이용하기 위한 정보 및 경영진 측 전문가가 준비한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이 포함됨. • 적용자료는 질적 정보 및 미래예측정보와 관련된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할 때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증거의 충분성 및 적절성이라는 특성에 대해 상세히 언급함. • 증거로 이용하려는 정보의 목적적합성 및 신뢰성에 의구심이 있을 경우에 인증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요구사항 및 적용자료가 제공됨. • 인증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적용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절차에는 통제에 대한 테스트, 실증절차 또는 두 가지의 조합이 포함됨. • 인증인이 확보한 증거의 충분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며, 업무수행리더는 도출된 결론을 뒷받침하고 인증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해 충분히 	
--	--	---	--

		<p>적절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판단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함.</p>	
<p>우선순위영역 5: 실체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이 인증인이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인증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p>	<p><u>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인증인이 제한적 확신 업무에 대해서는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고 합리적 확신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도록 요구함. • 합리적 확신업무의 경우, 통제 활동에 대한 인증인의 이해에는 인증인이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통제 및 관련 IT 일반 통제를 식별하는 것이 포함됨. 제한적 확신업무의 경우, 인증인은 테스트하려는 통제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도록 요구됨. • 제한적 확신업무와 합리적 확신업무에 대한 직무수행 차별화와 제한적 확신에 대한 조건부 요구사항(예: 인증인이 통제 활동의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려고 계획하는 경우에만 통제 활동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도록 요구됨)을 통해 확장성을 논함. • 적용자료는 통제환경, 실체의 위험평가절차, 내부통제시스템 모니터링 절차 등 실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의 형식 수준이 실체의 규모와 복잡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인증 대상 및 해당 준거기준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성 • 집행가능성 •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상이한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설계를 평가하고 통제의 실행을 결정하며, 통제의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적용자료를 포함함. • 실체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해당 통제를 테스트하는 것이 인증인이 증거로 사용할 정보의 적절한 출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적용자료에 명확히 기술됨. 	
<p>우선순위영역 6: 서술형 정보 및 질적 정보 맥락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인증업무 맥락의 중요성</p>	<p><u>요구사항</u> 문단 91 - 93 문단 143 <u>적용자료</u> 문단 A270 - A28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를 계획 및 수행하고 지속가능성 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인증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공시에 대한 중요성 고려, 그리고 ◦ 양적 공시에 대한 중요도 결정 • 상황에 따라 인증인이 양적 공시에 대한 수행중요성을 판단하도록 요구함. • 중요성이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근거로 하므로, 합리적 확신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제한적 확신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동일하다는 점이 적용자료에 명시됨. • 중요성에 대한 인증인의 고려(질적 공시) 또는 결정(양적 공시)과 관련된 요소와 수행중요성에 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목적적합성</i> • <i>포괄성</i> • <i>실행가능성</i>

		<p>인증인의 결정의 근거가 적용자료에 상세히 설명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중요성은 상이한 공시에 대해 고려 또는 결정되므로, 동일한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복수의 중요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적용자료에 명시됨. • 실체의 “보고 주제 식별 절차”, “중요성 평가”, 또는 “중요성 절차”는 의도된 이용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주제 및 주제의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며, 경영진의 “중요성 절차”는 인증인의 중요성과는 다르다는 점이 적용자료에 설명됨. • 인증인이 미수정 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앞서 중요성이 여전히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함. 	
--	--	--	--

The structures and processes that support the operations of the IAASB are facilitated by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thics and Audit™ (IFEA™).

The IAASB, IFEA and IFAC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Assurance Engagements,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view Engagements,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lated Services, 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Management, International Auditing Practice Notes, Exposure Drafts, Consultation Papers, and other IAASB publications are copyright of IFAC.

Copyright © April 2023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make copies of this work to achieve maximum exposure and feedback provided that each copy bears the following credit line: "Copyright © April 2023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or IFAC®. All rights reserved. Used with permission of IFAC. Permission is granted to make copies of this work to achieve maximum exposure and feedback."

The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Assurance Engagements',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view Engagements',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lated Services', '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Management', 'International Auditing Practice Notes', 'IAASB', 'ISA', 'ISAE', 'ISRE', 'ISRS', 'ISQM', 'IAPN', and IAASB logo are trademarks of IFAC, or registered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f IFAC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thics and Audit' and 'IFEA' are trademarks of IFEA, or registered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f IFEA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For copyright, trademark, and permissions information, please go to permissions or contact permissions@ifac.org

국제회계사연맹(이하 IFAC)에서 2024년 8월에 영문으로 발간한 본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안 5000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설명자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4년 9월에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IFAC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IFAC의 모든 간행물의 승인된 문구는 IFAC에서 영어로 발간한 것이다. IFAC은 번역의 정확성이나 완전성과 그에 따르는 조치에 대해 책임이 없다.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안 5000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설명자료」의 영문문구 © 2024 by IFAC. All rights reserved.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안 5000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설명자료」의 한글문구 © 2024 by IFAC. All rights reserved.

원제: Explanatory Memorandum for Proposed 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rance™ (ISSA) 5000 General Requirement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 Engagements

본 문서를 재생산, 보관, 전송, 혹은 유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Permissions@ifac.org에 연락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529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7
T + 1 (212) 286-9344 F +1 (212) 286-9570
www.iaasb.org

“IAASB” and their respective logos are trademarks of registered trademark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IFAC).

“IAASB”와 해당 로고들은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상표권 혹은 등록된 상표권입니다.

DISCLAIMER

본 공개초안 국문번역본은 참고목적으로 제공하는 번역 초안의 성격으로서 오타자, 용어 등에 대한 추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본 공개초안 국문번역본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제한된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개초안 국문번역본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영문 버전이 우선합니다.